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통교부세 특례 강화〉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8호)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5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현행 제도	6
2. 세종시 재정 특성 및 문제제기	10
3. 개정안별 검토	14

I. 제안경위

1.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38호)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3. 9.

다. 회 부 일 : 2026. 3. 10.

2.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52호)

가.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3. 20.

다.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준현의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2. 황운하의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적된 도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동안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불안정한 세입기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강준현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에 관한 세종시 재정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는 세종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시 재정부족액에 가산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안은 세종시의 일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에 관하여, 현행 재정부족액 보정 방식을 정률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몰조항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강준현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제14조(재정 특례) ① (생략)	제14조(재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② ----- ----- -----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② ----- ----- -----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illegible]

1. 현행 제도

현행법 제14조는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¹⁾ 제2항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²⁾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재정부족액)에, 그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정 구조를 두고 있음.

이러한 재정특례의 적용기한은 법 제정 당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규정되었다가, 이후 세 차례 연장되어 현재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³⁾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⁴⁾

이 중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기준재정수요액은 ① 측정항목별 기초통계와 단위비용에 따른 기초수요액, ② 섬·벽지, 낙후지역 개발 등 일반 산식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유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수요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 항목 등으로 구성됨.⁵⁾

3)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교부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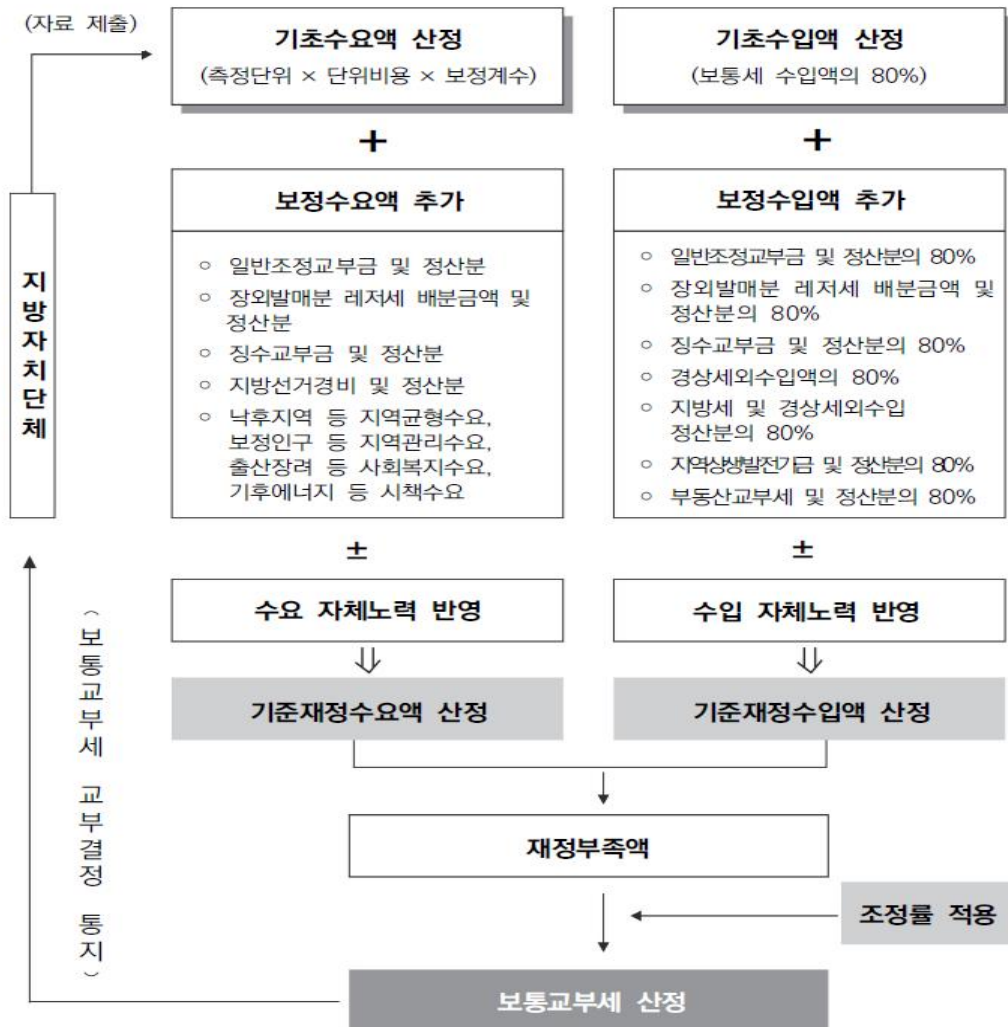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법적 근거	「지방교부세법」 제6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주요 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기본 행정수요 보장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재난·국가시책 등에 대한 지원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재원 배분	소방·재난 및 안전 분야의 재정수요 지원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보통교부세 배분분 (97%)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특별교부세 배분분 (3%)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
교부 대상	지방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교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지원 성격	일반재원	특정 현안·재난 등에 대응하는 보완적 재원	일반재원	소방·안전 분야 중심의 목적성 재원

5) 「지방교부세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은 보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정수요는 특수한 수요를 예외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함.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자료: 2026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행정안전부)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불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단위: 억원, 개)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교부세산정액	교부단체
계(174) (불교부 포함)	1,473,438 (1,792,605)	619,424 (957,233)	854,013	606,984	170
특·광역시(8)	317,123	202,723	114,400	80,169	7
도(8)	212,205	94,078	118,127	82,781	7
시(75)	598,344	261,139	337,205	236,306	73
군(82)	345,765	61,484	284,281	199,218	82
제주(1)	3% 정률교부			18,510	1

* 괄호 안은 불교부단체 포함분임. 교부세 산정액에는 산정 이후에 반영되는 감액·인센티브·보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2026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행정안전부)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로서,⁶⁾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임.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 및 교육행정 운영에 관한 표준적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학예 관련 수입예상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로 산정됨.⁷⁾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되어, 시·도교육청의 표준적 교육재정수요를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함.⁸⁾

2. 세종시 재정 특성 및 문제제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광역·기초 기능이 통합된 단층제 행정체계, 국가계획도시로서의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재정수요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세종시의회 결의안, 연구보고서⁹⁾,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바 있음.

세종시의회 결의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인구 및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동안에도 보통교부세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9) 김홍주·남영식·강인호, 『세종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39, 2020. 본 보고서는 세종시의 세입 악화와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①이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정부청사 비과세에 따른 지역관리비의 보정수요 반영 건의, ②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③교통·일반관리·노인복지비 등 세출 구조의 전략적 개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을 보여 왔고, 같은 단층제 특별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교부¹⁰⁾받는 것과 비교할 때, 세종시에 대한 교부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¹¹⁾

또한 최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단층제 행정구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의무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종시 재정이 중기적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음.¹²⁾

2026년도 예산 기준 재정지표를 보면, 세종시는 재정자립도가 51.6%로 전국 상위권(3위)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59.9%로 중위권(13위)에 그치고 있음. 이는 자체세입 비중은 비교적 높으나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재원을 포함한 가용재원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2025.12.15.). 동 결의안은 세종시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함에도 도로관리 등 9개 필수 기초 행정수요가 산정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①교부세 산정방식 내 기초 행정수요 전면 반영, ②제주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③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항구적 연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음.

12) 뉴데일리 대전·충청·세종, “세종시 ‘올 하반기 1천억 재정 부족’… 시정5기, 전면 재정혁신 나선다”, 2026.06.26.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6/06/26/2026062600005.html>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2026년 예산 기준)¹³⁾》

구 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 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서울	74.0	1	75.2	1	경기	54.4	2	62.1	9
부산	41.4	7	55.1	17	강원	25.0	15	68.7	2
대구	38.6	8	58.4	15	충북	31.9	11	63.7	7
인천	47.3	4	58.7	14	충남	33.4	10	64.9	4
광주	38.2	9	57.2	16	전북	23.3	17	61.6	10
대전	42.6	6	60.9	12	전남	26.8	14	65.9	3
울산	44.3	5	64.6	6	경북	23.5	16	64.9	5
세종	51.6	3	59.9	13	경남	31.0	13	61.2	11
					제주	31.0	12	62.2	8

자료: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6년 보통교부세 시·도별 배정내역》

(단위: 억원)

구 분	계	시·도 본청분	시분	군분
계	616,984	181,485	236,285	199,214
서울	1	1	-	-
부산	21,127	19,817	-	1,311
대구	20,499	15,855	-	4,645
인천	14,223	10,500	-	3,723
광주	11,769	11,769	-	-
대전	11,359	11,359	-	-
울산	11,954	9,654	-	2,301
세종	1,203	1,203	-	-
경기	43,565	11	37,943	5,611
강원	65,317	11,245	24,378	29,694
충북	38,824	8,042	14,580	16,203
충남	53,789	9,465	26,452	17,873
전북	56,829	10,384	26,996	19,449
전남	78,589	14,155	18,900	45,533
경북	98,789	18,404	52,352	28,033
경남	70,635	11,112	34,684	24,840
제주	18,511	18,511	-	-

자료: 2026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행정안전부)

- 13) 재정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측면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더한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사용 측면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에 강준현의원안은 현행 재정부족액 보정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보정률 상한을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황운하의원안은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정률교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단층제 행정체계와 행정수도 기능에 따른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수요를 현행 제도보다 두텁고 안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세종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

구분	현행법 제14조	강준현의원안 (제2217338호)	황운하의원안 (제2217652호)
적용 조항	제14조제2항(보통교부세), 제3항(보통교부금)	제14조제2항, 제3항 개정	제14조제2항 개정
적용 대상 재원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기준재정수요액·수입액 차액 + 그 차액의 <u>25%</u> 이내 가산	기준재정수요액·수입액 차액 + 그 차액의 <u>50%</u> 이내 가산	보통교부세 총액의 <u>1%</u> 를 세종시에 정률 교부
적용 기한	2026년까지 한시 적용	2029년까지 <u>3년 연장</u>	<u>일몰기한 삭제</u>
제도 성격	한시적 보정 특례 (한도 25%)	한시적 보정 특례 강화 (기간·가산율 확대)	정률 배분에 의한 상시적 특례로 전환
교육 재정 (보통 교부금)	25% 이내 가산, 2026년까지	50% 이내 가산, 2029년까지 연장	현행 유지 (2026년 일몰)

3. 개정안별 검토

강준현의원안은 현행 제도의 기본 구조(기준재정수요·수입 간 차액을 기준으로 재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이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를 유지한 채 적용기한과 가산율만 조정하므로, 제도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고,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입법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다만, 당초 5년 한시로 설계된 특례가 이미 세 차례, 총 9년 연장된 상태에서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산정체계 개선 없이 일몰기한만 반복 연장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어, 2029년 기한 도래 시 동일한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가산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국고 부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재정 건전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관한 검토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특례의 기한 연장은 세종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보정률 상한을 상향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황운하의원안은 일몰조항을 폐지하여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상시 규범으로 전환함으로써, 한시 특례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시한 도래에 따른 불확실성과 반복적 입법논의 및 행정력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적용할 경우, 그 금액은 2026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액(약 1,200억원)의 약 5배 수준인 약 6,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바,¹⁴⁾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교부율 1%에 대한 객관적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재정수요 대비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로 고정될 경우 향후 제도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기본원칙 및 장기적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정률로 배분하는 방식은 재정부족액에 따른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이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 세종시 교부 비중(2025년 0.19%)에 비해 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다른 지방정부의 교부액 감소 및 재원배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⁵⁾

14) 2026년 예산 기준 보통교부세 배정액은 총 61조 6,984억원임

15)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폐지 전 관할 자치단체(본청, 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 비중('04년: 2.76%, '05년: 2.93%, '06년 3.03%)을 감안하여 3%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종합하면,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은 한정된 재원으로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강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의 연장 및 가산을 확대 여부, 보통교부세에 대한 정률교부 방식의 도입 여부 등은 재정소요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 가운데 강준현의원안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일정 기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단기적 보완조치로 검토될 수 있고, 황운하의원안이 제기하는 정률 특례 도입 방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전반의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